

교직원 징계 처분 실효(失效) 및 기록에 관한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교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징계처분의 종료 기타 「사면법」에 의해 사면된 경우에도 인사기록상에 기록 자체는 남게 되어 향후 「상훈법」에 따른 포상·표창 등 명예에 관한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가 있고, 이로 인해 장래를 향한 근무성취 의욕의 감퇴와 사기저하 기타 무사안일 등 적극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,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함으로써 교직원으로서의 긍지회복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, 공무원·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처분기록의 말소에 관한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(약칭: 형실효법)」 ([시행 2017. 12. 19] [법률 제 15258호, 2017. 12. 19, 일부개정]) 제7조 및 「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」 (대통령령 제28211호, 시행 2017.7.26.) 제9조 등 관련 규정을 본교 교직원에게도 준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신중한 처리를 위해 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인적 적용범위)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본교 교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.

제3조 (물적 적용범위) 이 규정은 교직원에게 대해 교직원징계위원회(학교법인에 설치된 것 포함) 등에 의해 내려진 징계처분이 확정되고 당해 교직원에게 통지되어 인사기록에 등재된 경우에 적용된다. (개정 2022. 2. 14.)

제4조 (처리원칙) 교직원의 징계기록말소에 관하여는 「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」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기록말소의 요건과 기준 및 이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제2장 명예회복위원회

제5조 (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교직원의 징계기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본교에 명예회복위원회를 두되, 명예회복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② 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다만 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을 최소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.

1. 내부위원: 본교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

가. 본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을 것

나. 교무위원회의 교무위원이 아닐 것

2. 외부위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법관,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나.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
다.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중에서 법률학 기타 법적 소양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라. 동창회장

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또는 본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④ 총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- 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4.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(신설 2019. 8. 29)

제6조 (명예회복위원회의 회의 소집) 총장은 본교 교직원 중 제11조 소정 징계기록말소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지하였을 때 또는 「사면법」에 의한 징계기록말소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지하였을 때 명예회복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(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) ① 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② 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리한다.

③ 명예회복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8조 (명예회복위원회의 규정 내용) 명예회복위원회에서는 징계 처분의 내용과 경중을 참작하여 징계 처분 실효(失效) 및 기록에 관하여 판단한다.

제9조 (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·의결) ① 교직원의 징계기록말소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는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.

② 교직원의 징계기록말소 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주관부서인 교무처에서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고 법인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(신설 2019. 8. 29)

제10조 (명예회복위원회의 간사) ① 명예회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본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3장 징계기록말소

제11조 (징계기록말소의 요건) 제9조에 따라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한 징계기록말소를 위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야 한다. 다만,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. (개정 2022. 2. 14.)

- 1. 강등 : 9년
- 2. 정직: 7년
- 3. 감봉 : 5년
- 4. 견책: 3년
- 5. 직위해제 : 2년
- 6.경고(불문경고 포함), 주의: 1년

제12조 (징계기록말소의 방법) 징계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의 해당 징계처분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.

제13조 (전력조사 및 경력증명 등)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 또는 이 규정 시행 이후에 퇴직한 교직원에 대하여 외부기관의 전력(前歷)조사 요청에 대해 회보하거나 해당 교직원의 요청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이미 말소된 징계처분기록은 기재하지 아니한다.

제4장 보 칙

제 14조 (비밀누설금지) 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, 간사 기타 업무에 관여한 자는 명예회복위원회의 임무, 운영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기타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28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8. 29)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2. 14)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